

서
기
크
크
사
리

모든 공무원 행정학 대비
고득점에 필수적인 행정학 법령 총정리

2025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행정학



이공이오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을 펴내며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4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4 지방9급에서는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2025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2025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2024 출제경향을 추가로 반영하여 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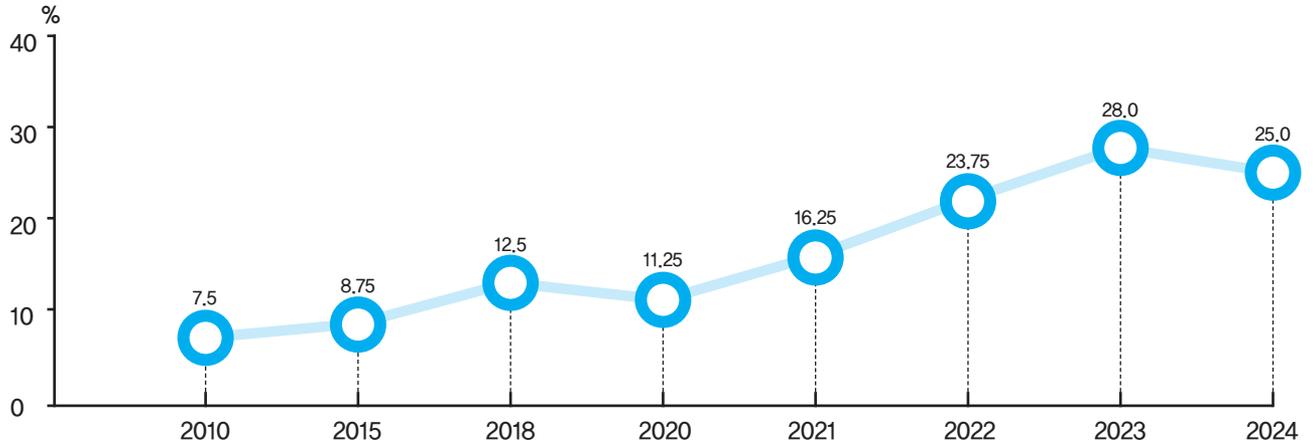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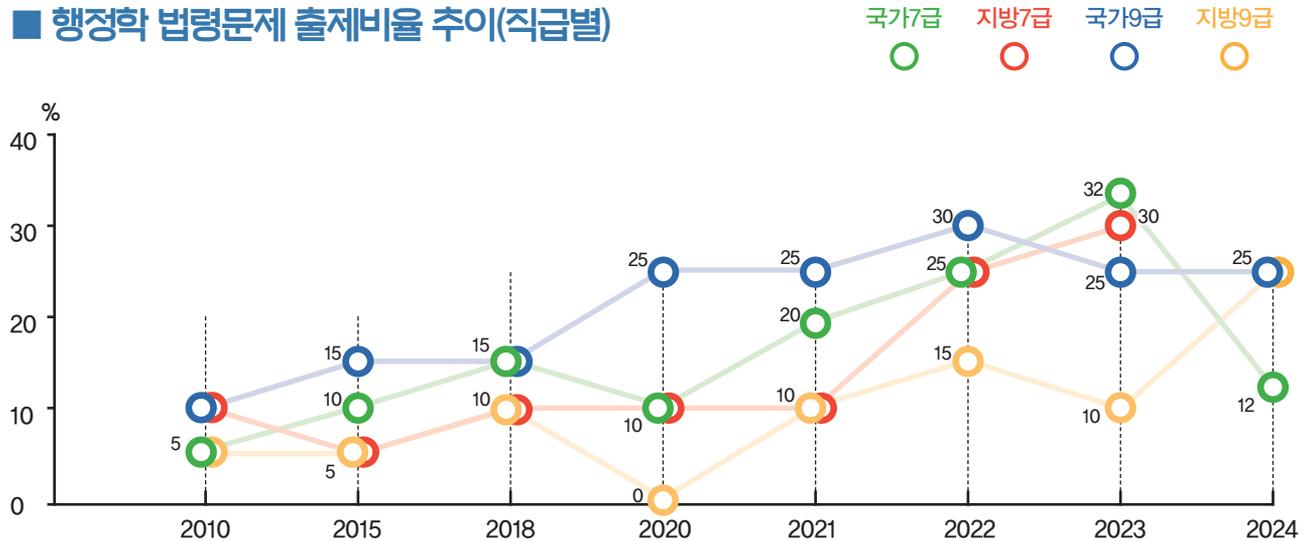
2024.10.21.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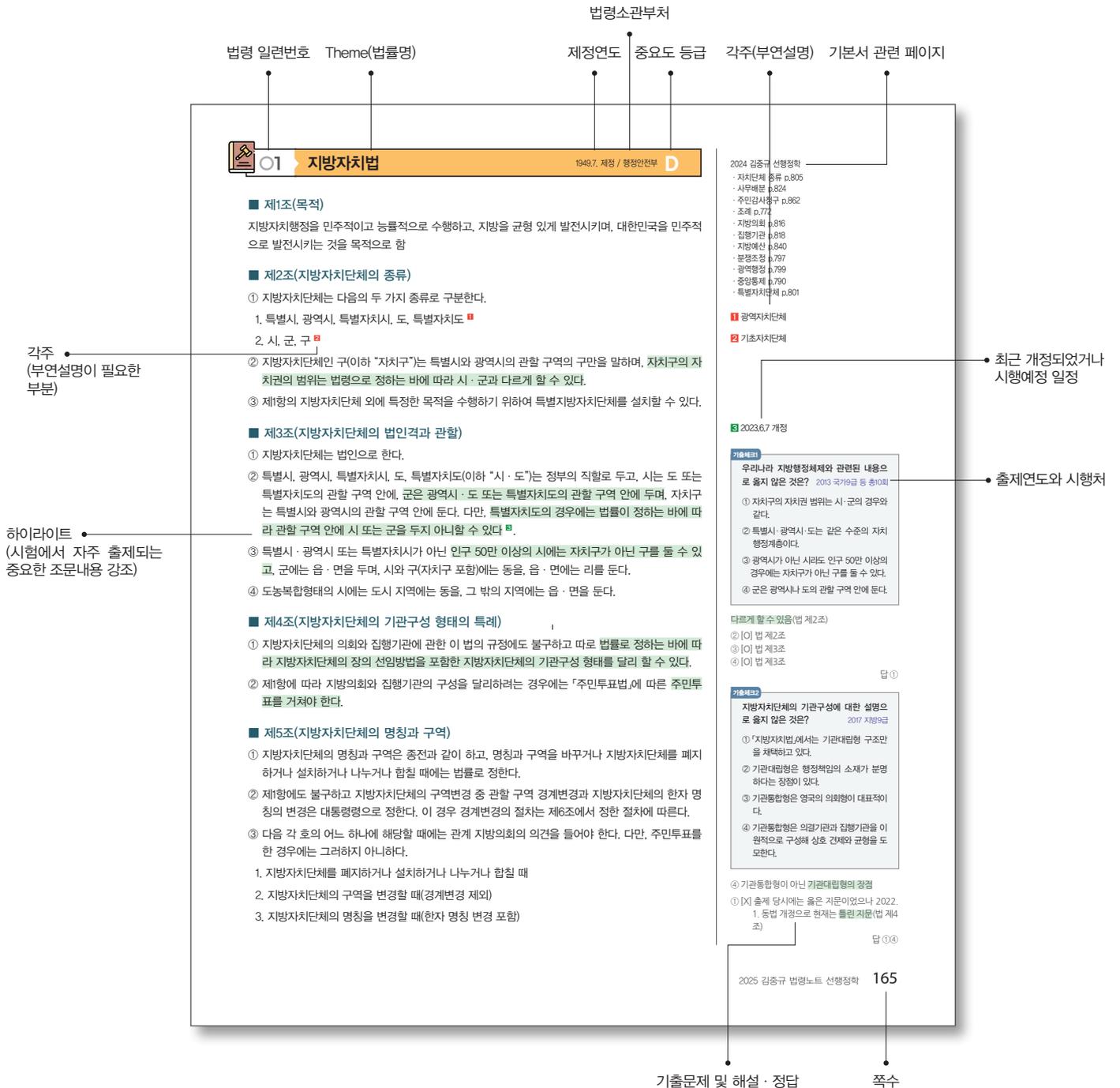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직급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STRUCTURE



CHAPTER

01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5조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기출체크1

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볼 수 없는 것은? 2017 국회9급 등 4회

- ① 공무원 보수
-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②는 해당되지 않음(헌법, 제54조)

답 ②

1 준예산제도

기출체크2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수정)

-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국회법, 제44조)

- ① [O] 「국가재정법」 제33조
- ② [O] 「헌법」 제54조

답 ④

2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5년 이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국회의결로 연장 가능

3 국고채무부담행위

4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 조세법정주의

■ 제1조(목적)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제2조(정의)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갈등영향분석)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협의회 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청심사청구)

-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

- ①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진술권)

- ①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 ②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정의)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통령
-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카. 검찰총장
-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파. 판사 및 검사
-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거. 장성급 장교
-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처장·차장 등)

-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9조(인사위원회)

-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기출체크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2024 국회8급

- ① 국회사무총장
- ②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③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장은 특수경력직이 아닌 경력직 중 특정직(법 제 4조)

- ① [O] 특수경력직 중 경무직(『국회사무처법』 제 4조)
- ② [O] 특수경력직 중 경무직(『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 ③ [O] 특수경력직 중 경무직(『헌법재판소법』 제 18조)
- ⑤ [O]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국회사무처법』 제 8조)

답 ④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²

■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³

2025 김중규 선행정학 p.845

¹ 1994.1. 제정된 「교통세법」이 2007.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편

² 목적세

³ 당초 2025.11. 폐지되는 한시적 목적세로 설치되었으나 과세기간을 2027.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최근 정부여당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2024.9.).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7.12.31.까지 존속되게 된다.

**■ 제1조(목적)**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

■ 제2조(정의)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96개 법률

기술체크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7급

- ①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부담금은 조세의 금전지급의무임(법 제2조)

답 ③

선
공
사
디

2025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정학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교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판 2024년 10월 28일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60-5

값 18,000원



9 791192 405605

13350